

부산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가단3380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묘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27. 접수 제238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C은 1970. 6. 12.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망 C이 사망하여 원고가 2005. 11. 3. 망 C 소유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05. 3.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22773호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 등 소를 제기하여, 2019. 9.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10. 12.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9. 10. 2. 위 화해권고결정과는 별개로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0. 1.까지 6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이 합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22773호 사건에 관하여 제기한 소를 취하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2.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6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20. 10. 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공증인 법무법인 D 2019. 10. 2. 작성 2019년 증서 제463호).

마. 피고는 2019. 11. 27.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27. 접수 제23811호로 이 사건 건물 중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8. 11. 6.자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인 E을 통하여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 중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E은 F를 대리하여 F의 피고에 대한 6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5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9. 10.

10.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G조합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9. 10. 10.

E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고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06카단2217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에 인장을 날인한 후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취하서 등의 자료를 대리인 E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06. 11. 14.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06. 11. 10.자 가처분결정(부산지방법원 2006카단22171)을 원인으로 하여

피보전권리를 협의상속재산분할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으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는데, 2019. 10. 16. 위 가처분등기가 2019. 10. 10.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5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이 사건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한편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E이 2019. 10. 2. F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2019. 10. 2. F에게 60,000,000원을 지연손해금 연 12%, 변제기

2020. 10.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여 준 사실, E이

F에 대하여 상당한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1. 6.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21. 6.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2019. 10. 10. 변제한 60,000,000원이 원고의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사실을 뒤집고 F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경아

별지